

소 장

원 고 강 현 일
피 고 대한민국

소송물가액 금10,000,000원

인 지 대 금50,000원

송 달 료 금22,600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서울지방법원 귀중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변호사 河昇秀 · 李相勳

TEL : (02) 587-9400
FAX : (02) 587-9373

소 장

원 고 강 현 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수, 이상훈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2의10 서정빌딩 4층

(TEL. 587-9400, FAX. 587-9373)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상 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전경 및 경찰관들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한 바 있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불법 체포 및 구금

(1) 원고는 1998. 8. 15. 14:30경 서울대 정문을 통해 서울대학교로 들어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문앞에 서 있던 전경(제1033중대 소속)이 갑자기 자신의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고 학생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학생증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원고는 그날 서울대 전산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등교하던 길이었습니다.

(2)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른 전경들도 합세하여 원고에게 학생증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경들은 집단적으로 원고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3) 이에 원고가 계속 '서울대생이 맞으니 들어가겠다'고 하자 전경들이 막아섰고, 그 중 한 전경이 선임자로 보이는 다른 전경의 명령에 의하여 원고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그 전경과 약 30분간 마주본

(4) 30분쯤 지났을 때 원고를 지키라고 한 선임자로 보이는 전경이 원고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학교에 들어가든지 돌아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학생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자, 갑자기 그 전경은 시설보호요청으로 타학교 학생은 들어갈 수 없는데 무슨 소리냐며 원고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신청인을 지키고 서 있던 전경과 다른 전경에게 원고를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5) 전경들은 원고에게 어디로 데려간다고 말하지도 않고 순찰차로 데려갔고, 다시 신림파출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곳에서 원고는 전경들의 수송차량(일명 '닭장차')에 2시간 쯤 앉아 있다가 서초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6) 원고는 서초경찰서에 18:00경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02:00에야 풀려났습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원고는 경찰서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서를 썼을 뿐 별다른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담당형사의 이름은 이호국, 주향원).

나. 불법 소지품 검사

서초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은 원고의 동의없이 책가방을 임의로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책가방에는 거시경제학 책 1권이 들어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 불법 가택 수색

(1) 원고는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중간에 담당 경찰관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의 집을 불법적으로 수색당하였습니다. 즉 담당 경찰관은 1998. 8. 16. 01:00경 원고를 데리고 원고의 집으로 갔습니다.

(2) 담당경찰관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원고의 자취방에 가서 자취방에 있던 원고의 친구 송형진에게 원고에 관한 질문을 하고 원고의 방을 둘러보고 책 몇권을 살펴본 후, 원고를 데리고 다시 서초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인 1998. 8. 16. 02:00경 원고를 석방하였습니다.

라. 관련 법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사정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질문을 할 때에 흥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4항에서는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7항에서는 이러한 불심검문에서 질문을 받는 시민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 소 결

(1) 전경이 학교에 등교하려던 원고를 가로막고 원고에게 학생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전경은 법 소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학생증의 제시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조항에 의하면 동행시에는 동행장소를 밝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연행한 전경은 동행장소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전경이 원고를 30분간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붙들어 둔 후, 공무집행방해죄 운운하면서 원고를 체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에서는 불심검문에서 질문을 받는 시민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불법으로 체포·구금을 당하였습니다.

단순히 학생증의 제시를 거부한 원고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운운한 하면서 체포·구금한 것은 형사사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명백히 범죄혐의없는 원고가 서울대학교 정문앞에서 30분, 전경수송차량내에서 2시간, 서초경찰서에서 8시간 등 무려 11시간 30분 동안 구금이 되어 있었던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원고는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었지만, 실제로 서초경찰서에서는 조서 한 장 작성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 1장만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전경은 원고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무시하고, 진술거부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조차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가 명백히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서초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은 원고의 승낙없이 원고의 가방을 열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

지품검사는 불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원고가 명백히 범죄혐의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초경찰서의 담당경찰관은 영장없이 원고의 집을 수색하였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영장주의를 위배한 것입니다.

(5) 이상과 같이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원고를 구금하고, 원고의 가방과 집을 불법수색한 전경 및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으면서 무려 11시간 30분동안 불법구금을 당하였고, 불법으로 가방검사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장도 없이 집을 수색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모욕감을 느껴야 했고, 그로 인하여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 본건에서처럼 국가공무원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입 증 방 법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72-10
서정빌딩 4층

합동법률사무소 **길벗**

변호사 河昇秀 · 李相勳

TEL : (02) 587-9400
FAX : (02) 587-9373

1. 강제1호증 접수증명원

1. 강제2호증 진술서

기타의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부분 1통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998. 12. 10.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승 수

변호사 이 상 훈

서울지방법원 귀중